

의안번호	2217308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6.4.30.
추계번호	26C13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등)	○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u>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의 육성</u> 등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별·분야별·요양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건강 회복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49조의2 (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산정·지급 등)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한다.(제1항) 1.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 유지 2. 요양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의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공공정책급여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이 실시한다.(제2항) ○ 공공정책급여의 방법·절차·범위 등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산정·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9조의2 (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의 산정·지급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 요양기관 간 협력 및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개선 등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양기관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공공정책급여’를 명문화하고자 함
 -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대상(안 제47조의3)에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의 육성”을 포함하고 분야별·요양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공공정책급여에 대한 조문(안 제49조의2)을 신설
-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그에 연계된 국고지원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현행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에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어, 건강보험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¹⁾.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며²⁾,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 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³⁾⁴⁾

□ 다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급여 명문화에 따라 추가로 도입될 수가 체계와 그 규모 등이 정해져야 하나,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의 규모와 공공정책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개정안 제47조의3제2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건강 회복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 개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공공정책급여 지급 방법·절차·범위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이미 중증·고난도·응급, 소아·분만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소아·분만 분야와 네트워크 보상, 전달체계 개선 목적의 대안형 및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제화에 따른 사업 확대 규모를 예상하기 곤란함

- 2025년 기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1,771억원,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1조 2,746억원 소요됨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 2) 건강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 4) 2023~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그림 1] 공공정책수가 운영 현황

분야/목적	공공정책수가	
	보완형 (본수가+시범사업)	대안형 (시범사업)
중증/고난도/응급	행위별 수가 가산	
소아·분만	행위별 수가 가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심혈관질환/모자의료/소아진료 협력체계 보상
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 포괄2차병원 지원 사업 등 (24시간 진료지원금/ 성과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